의안번호	제510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3월 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510

제출연월일: 2024년 3월 5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대상 여부 심의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 게 수정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(안 제4조)
-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~제7조)
- 적극행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반영(안 제6조)
- 위원 해촉 사유 추가(안 제10조)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적극행정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 워 대상이 되는지 여부

제5조제2항 중 "위원장"을 "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위원은"을 "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위원회"를 "위원회의"로, "연2회"를 "연 2회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재적의원"을 "제2항에 따른 구성원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 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7조제1항 중 "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"을 "위원장"으로, "지원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한다.

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	제4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
능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	<u>-</u>)
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	
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	
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(이	
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적극행정 공무원(퇴직한 공
	무원을 포함한다)이 영 제17
	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
	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
	및 민사소송 수행에 필요한
	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<u>6</u> . (생 략)	<u>7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위원회의 <u>위원장</u> 은 영 제11	② 위원장(이하 "위원
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부지	<u> 장"이라 한다)</u>
사로 한다.	
③ 위원회의 <u>위원은</u> 충청북도	③ <u>위원(이하 "위원"이</u>
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	<u>라 한다)은</u>
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	
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	
하되,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	
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	

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(생 략)

- 제6조(회의) ① <u>위원회</u> 회의는 정 제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<u>연2회</u>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<u>재적의원</u>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<<u>신</u> 설>

<신 설>

- ③ (생 략)
- ④ (생략)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회</u> 제 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

④ (현행과 같음)
6조(회의) ① <u>위원회의</u>
<u>연</u> 2회
<u>U 44</u>
<u>_</u>
· ③ 제2항에 따
<u> </u>
<u>.</u>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
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
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
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
려운 경우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장</u> -

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 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민 저 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<u>위원회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10조(위원의 해촉)	
1. ~ 4. (현행과 같음)	•
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<u>경우</u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 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

- 제10조(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- 2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 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 - 3.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 - 3의2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 - 4.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- 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 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한다.
 - 1. 시·도의 경우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·행 정부지사,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

- 2. 시 · 군 · 구의 경우: 부시장 · 부군수 ·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 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- 제11조의3(위원의 해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